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8.

발 의 자 : 강선영 · 이달희 · 강대식
서명옥 · 김 건 · 유용원
최수진 · 김용태 · 구자근
임종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 · 도검 · 화약류 등에 대하여 그 제조 · 수입 · 수출 · 양도 · 양수 · 소지 · 사용 · 저장 ·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 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군용화약류 제조업체의 사업장 경내 세척공실 등 부속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, 해당 시설이 현행법령상의 ‘제조 · 저장시설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방위사업청의 허가 ·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났음.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화약류 등의 세척 · 수거 · 분해 등의 공정의 경우 안전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군용화약류의 제조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 · 수거 · 분해 등의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,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 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군용화약

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
(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).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군용총포·도검·화약류 등”을 “군용총포·도검·화약류 등(이하 “군용총포등”이라 한다)”로, “제조”를 “제조(세척·수거·분해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군용총포·도검·화약류 등”을 “군용총포등”으로,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-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한 법률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-----.